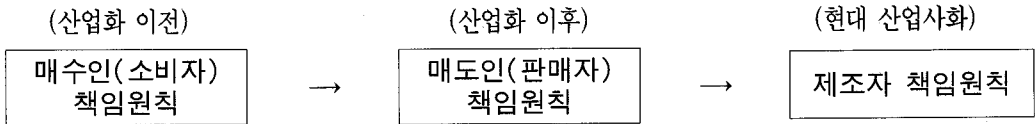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다음은 지난 1월 27일 (목요일 19:00) 스포타임(5층 한식당)에서 『전기를 연구하는 모임』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박희주 박사(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가 “확정된 제조물 책임법의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문을 발췌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체나 소비자에게 초미의 관심사안이므로, 전기용품제조업체, 전기용품수입업체 그리고 전기용품 유통업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

손해배상책임의 발전



제조물책임의 탄생 및 의의

제조물책임은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조립식 동력 선반의 제조자는 소비자가 아무런 검사도 없이 그 제품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제품을 유통시키고, 그후에 그 제품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면 제조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조물책임이 탄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일본, 호주, 중국, 브라질, 필리핀 등 30개 가까운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은 결함있는 제품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을 증명하면, 제조자는 결함제품을 제조한 것에 고의·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다른 책임과의 구별

	채무불이행 책 입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	일반불법행위 책 입	제조물책임
책입의 성격	계약책임	계약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필요여부	과실필요	과실불필요	과실불필요	과실필요	과실불필요
손해배상범위	모든 손해	제품 자체	보증내용	모든 손해	확대 손해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제품(2조 1호 참조)

- 제조물책임은 주로 대량생산·대량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가공·제조된 모든 동산」이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가공」 또는 「제조」란 손을 가함으로써 물건의 종류·성질이 변하는 경우를 널리 포함하는데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그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한다. 제조는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서비스는 제외된다.
- 「동산」이란 우리 민법상의 동산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며,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동산에는 전기 등 무형에너지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스팀, 상수도 또한 유체물로서 당연히 포함된다.
- 중고품·재생품이 포함된다.
-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된 공조설비·조명설비·승강기 등을 포함한다.
- 미가공 농림수축임산물은 제외되나 냉동·보존·조리 등에 의하여 물건의 종류·성질(속성)이 변한 경우에는 제조물에 포함시킨다.
- 부동산은 제외된다. 다만 아파트 등 대량 공급주택은 제외된다.
- 소프트웨어·정보 등 지적재산물은 제외된다.
- ※ 시작품일 경우, 불특정 또는 특정 소비자에게 공급된 이상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트램플린 제조자가 신형 트램플린을 제조하여 회사 앞 공터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였다면 제조물책임대상에 해당된다.

책임의 주체(2조 3호 참조)

- 결함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음의 사람들이 책임주체에 해당된다.
- 완성품 제조업자·가공업자
- 부품 또는 원재료 제조업자·가공업자
- 표시제조업자·가공업자 → PB상품, OEM상품
- 수입업자
- 도·소매업자 등 공급업자: 제조업자·가공업자·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
- 용역 제공자: 설비업자, 운반업자 등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자는 책임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 「업(자)」이란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한 경우를 말하며,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찾 이 슈

- 제빵업자가 팔고 남은 빵을 고아원에 제공하였으나, 이를 먹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 경품·답례품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

결함의 개념·유형·판단기준(2조 2호 참조)

- 제조물책임에서는 제품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한다.

-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제품의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

※ 결함과 하자의 구별

하자는 제품자체의 기능적 측면에서 불량이나 결함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결함은 소비자의 안전 측면에서 피해·위험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결함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 제품의 원료·부품이나 제조·가공과정 등에서 생긴 결함으로 설계도나 사양서에 합치되지 않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
- 설계상의 결함: 제품의 외형, 품질, 구조의 설계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합리적으로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
-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

※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 제조업자가 발행한 설치·조립 등의 매뉴얼·지시서의 오류에 기인하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위험의 인수문제: 제품의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지시가 없어도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①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피해자의 과실상계가 인정되는 경우 ③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위험이 중대한 경우)로 나뉜다.

※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의 관계:

피해·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설계가 경제적·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위험에 대한 지시·경고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어 제조업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결함의 판단기준

- 표준일탈기준: 제조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 이용되고, 제품이 통상의 상태에서부터 일탈하고 있는 경우 결함으로 인정된다.
- 소비자대기기준: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 이용되며,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결함으로 인정되나, 지금은 이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위험효용기준: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 이용되며, 제품이 갖는 위험성이 유용성을 상회하는 경우 결함으로 인정된다. 여기에서는 ① 제품의 유용성과 필요성, ② 제품의 안전성과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정도, ③ 제조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④ 소비자에 의한 위험방지 가능성, ⑤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⑥ 제조업자에 의한 손실분산의 가능성 등의 요소를 비교衡量.

- 소비자의 오사용

- 통상인이 행할 수 있는 오사용으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고려한 설계와 표시에 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인정한다. → 소비자의 실수·오사용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인정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제3조)

- 제조물책임에서 제조자 등 책임자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하는가의 문제
-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가 입은 손해도 대상이 되고, 결함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는 모두 포함된다.
- 인적 손해: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손해
- 물적 손해(확대손해): 포함 → 다만, 사업자간에는 면책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6조 단서 참조)
- 제품자체에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외 → 하자담보책임 등 적용
- 下限(면책금액) 및 上限(최고한도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입증책임(규정없음)

- 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어떤 사실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 즉 소비자가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 부담

제조업자의 면책사유(4조 참조)

- 제조물책임에서 제조업자가 지는 엄격한 책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면책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난 등에 의하여 사후에 제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 「공급」이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최초로 자기 지배하에 있지 않는 者에게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당해 제품을 공급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사실

③ 결함이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 부품·원재료제조자의 경우, 완성품 제조자의 설계·제작상의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⑤ 다만, 제품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②내지 ④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측에 고지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조 참조)

책임기간의 제한(7조 참조)

-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다.

○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때로부터 3년

○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 다만 사람의 신체에 누적·잠복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생긴 때로부터 10년

시행시기(부칙 참조)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급되는 제품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공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 연대책임 인정(5조 참조)

○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각자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결함에 의한 손해를 발생시킨 완성품 제조자나 부품제조자 각자에 대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면책특약의 제한(6조 참조)

제조물책임법 (법률 제6,10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표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기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표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